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4505호, 2024. 5. 14. 공포, 2024. 5. 17. 시행) 및 「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, 2024. 5. 17. 공포, 2024. 5. 17. 시행)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(안 제35조제1항)

-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<u>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<u>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</u> 2. <u>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</u> 3. <u>법 제25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</u> 4. <u>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22조의2에 따른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</u> 5. <u>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와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</u> 6. <u>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수장학생의 선정, 장학금의 지급과 지급 중단</u> 7. <u>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</u>	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<삭 제>

금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고
시

8. 법 제28조제2항 및 이 영 제2
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
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9. 법 제28조제3항 및 이 영 제2
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
공개 점검

10. 법 제40조에 따른 전통기술
개발의 지원

11.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
품 인증

12.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
품 인증의 취소

13.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
품은행의 운영

14. 법 제44조 및 이 영 제33조
의2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자
의 창업·제작·유통 등 지원

15.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유산
의 조사 및 기록화

16. 법 제52조제4호에 따른 전
승공예품 인증의 취소에 대한
청문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	
연 락 처	(063) 280 - 1612